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**6421**

제출연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('22. 7월)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(안 제5조제1항)
- 나.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제6항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0조(※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8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"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"의 정의는"을 ""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" 용어의 뜻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"협동조합협의회"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라"을 ""협동조합협의회"라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입각하여"를 "따라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둔다"를 "둘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. 제9조 중 "운영"을 "시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협동조합", "협동조합연	1
합회", "사회적협동조합",	"사회적협동조합
"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"의 정	<u> 연합회"용어의 뜻은</u>
<u>의는</u> 「협동조합 기본법」(이하	
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	
다.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4. "협동조합협의회"(이하	4. "협동조합협의회"란
"협의회"라 한다)란 협동조합	
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	
동조합등, 사회적협동조합등,	
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등이	
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협의체를	
말한다.	
5. ·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자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
주, 자립,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	따라
이념에 <u>입각하여</u> 건전하고 지속가	
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	
해 노력하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	제5조(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
의위원회)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	의위원회) ①

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<신 설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제9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----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둘 수 있다.
 - 1. ~ 3. (현행과 같음)
 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 다.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개정안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경제국 창업진흥과장 박윤희